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36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 송재봉·서왕진·이용선

김남근 • 전진숙 • 이용우

박정현 • 이광희 • 차규근

박홍근 • 박주민 • 김우영

이수진 · 차지호 · 이연희

남인순・김 윤・이강일

천준호 · 김동아 · 허성무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 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 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하여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의4(회계 관리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3(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2
	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
	서의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
	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
	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
	<u>다.</u>
<u><신 설></u>	제27조의4(회계 관리 교육) 기획
	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34조제1
	항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
	<u>여야 한다.</u>